

산업재산권 등록업무 편람(5)

본 내용은 특허청 등록과에서 발간한 「등록업무 편람 1998」의

제3장 <등록유형별 등록절차>를 연재하는 것임 <편집자 주>

특허등록

(1) 촉탁등록

촉탁에 의한 등록이란 다른 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원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세무서와 법원으로부터의 촉탁이 대부분이다.

(2) 촉탁등록의 형태

○ 처분 제한등의 등록촉탁(특등령20①)

법원은 특허권 등에 관하여 제한(예:가압류, 가처분, 압류, 회사정리개시, 화의개시 등)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촉탁

▶ 촉탁등록과 관련한 타법령의 규정

- 파산법제110조(파산등의 촉탁), 제111조(파산에 관한 다른 등기에의 준용), 제112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기세 면제), 제114조(등록에의 준용)
- 화의법 제8조(화의에 관한 등기, 등록)
- 회사정리법제17조(정리절차개시의 등기, 촉탁), 제18조(동전), 제19조(정리절차에 관한 다른 등기에의

준용), 제20조(등기소의 직무), 제22조(등록에의 준용)

- 국세징수법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55조(인지세 등의 면제)

○ 예고등록의 촉탁(특등령22)

법원은 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예고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

○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특등령59)

법원 또는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

○ 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특등령60)

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의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

(3) 등록절차

① 신청서 접수

총무과에서 접수번호가 부여된 등록촉탁서를 서무담당자가 수령하여 등록과 접수대장에 기입, 접수번호

호 부여후 촉탁담당자 인수

- ② 등록원부 출력
- ③ 등록방식심사(등록여부 검토사항)
 - 신청서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
 - 법원(세무서)의 결정문 첨부 여부
 -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의 기재사항
 - 등록수수료
 - ☞ 파산결정, 회의결정 등은 파산법 제12조, 회의법 제8조 등의 규정에 의거 등록수수료 면제
- ④ 전산입력 및 결재안 출력
- ⑤ 결재
- ⑥ 촉탁의뢰 기관(법원, 세무서) 과 등록권리자·의무자에게 등록필 통지
- ⑦ 등록원부 등재·정리 및 서류 보관
 - ☞ 등록방식심사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는 촉탁서 반려

※ 출원시 선임한 대리인도 “관리인”이며 이때의 단순선임과 설정등록후 선임등록관리인과는 등록호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특허관리인의 선임등록근거

-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특5①).
-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특5③).
- 재외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당해특허권의 존속기간중에는 특허관리인을 선임·등록해야 한다(특5④).
-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특허출원한 경우 불수리처리(특규11)

특허관리인의 선임등록

(1) 특허관리인의 의의

특허관리인이란 임의 대리인의 일종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자이다.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1항에서는 특허관리인을 강제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특허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허관리인을 선임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특허관리인의 권한

특허에 관한 일반절차의 수행 및 특허 수여된 권한의 행사(특5)

(4) 특허관리인 선임등록신청자

재외자 또는 특허관리인

(5) 등록절차

- ① 신청서 접수→접수대장에 기록(접수인 날인, 접수번호 부여)
- ② 등록방식심사(등록여부 검토사항)
 - 위임장(권리자, 등록번호, 명칭 등 확인) 및

그 번역문

○ 수수료

※ 보정, 불수리, 과오납결정 및 통지

- ③ 전산입력 및 결재안 출력 - 신청서와 대사하여 입력사항 확인
- ④ 결재
- ⑤ 등록필 통지
- ⑥ 등록원부 등재 · 정리 및 서류보관

가 등 록

(1) 가등록의 의의

가등록이란 장래의 본등록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을 말한다.

(2) 신청자

등록권리자(가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가처분명령에 의한 경우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특등령19①)

(3)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양도예약증서, 대물변제예약서, 대물변제증서

(4) 가등록요건(특등령2)

-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경우
- 특허권 ·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
- 위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

(5) 등록절차

- ① 신청서 접수 → 접수대장에 기록(접수인 날인, 접수번호 부여)
- ② 등록원부 출력
- ③ 등록방식심사(등록여부 검토사항)
 - 신청서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
 - 등록의무자 및 등록권리자의 기재 사항
 - 기타 원인서류의 구비여부
 -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 시기부 양도예약서 · 대물변제예약서, 대물변제증서
 - 수수료 납부 확인
 - ※ 방식심사 결과 보정 및 불수리결정
- ④ 전산입력 및 결재안 출력 - 신청서와 대사하여 입력사항 확인
 - 가등록 방법
 -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당해 권리자중 사항란에 등록

※ 가등락의 말소는 가등락명의인만으로 신청. 다만, 신청서에 가등락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락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특등령48)

⑤ 결제

⑥ 등록필 통지

⑦ 등록원부 정리 및 서류보관

➤ 가등락을 한 후 본등락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락의 아래에 가등락의 순위번호와 동일한 순위번호로 그 등락을 하여야 함. 본등락을 하기 전에 가등락의 말소신청이 있는 때에도 같음(특등칙51)

➤ 본등락 신청시는 가등락 신청시의 서류와 함께 검토하여야 함

※ 민법상의 가등기

① 가등기란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② 가등기의 유용성

○ 매매의 예약이라든가 또는 기한에 차용금을 반제하지 않을 때에는 대우반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하였을 때 또는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장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때를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등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 등기에는 순위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담보의 토지로 알고 매매예약을 하였을 경우 정식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동안 누군가가 먼저 지당권의 등기를 팔하면 당연히 그 등기를 팔한자의 권리가 우선하게 되므로 매매예약의 효력을 장래에 있어 담보하기 위하여는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는 효력이 있는 가등기가 필요하다.

③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에 소급하므로 가등기 후에 행한 모든 등기는 그 가등기와 상치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 조건과 기한(가등락과 관련한 정지조건부 및 시기부 권리)

① 조건·정지조건·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그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 정지조건은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여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사주겠다는 계약에 있어서 시험합격이 그것이다.

○ 정지조건부 권리란 이처럼 정지조건이라는 부관이 붙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위 예에서 보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시계를 얻게 될 자의 권리가 바로 정지조건부 권리이다.

② 기한·시기·시기부 권리

○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등을 장래에 있어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는 것으로 시기와 중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다.

○ 시기란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경우의 기한으로 그 시기의 도래에 당해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 예로는 내년 10월에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계약에서 내년 10월은 그 효력의 시기인 것이다.

○ 시기부 권리란 위 예에서 보면 내년 10월에 자동차를 인도받게 될 자의 권리가 시기부 권리인 것이다.